

# 계약제초빙교원·석좌교수인사규정

제정	1995.	3.
개정	1999.	3.
개정	2007.	3.
개정	2009.	1.
개정	2011.	3.
개정	2012.	9.
개정	2015.	2.
개정	2016.	2.
개정	2019.	8.
개정	2020.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계약제로 초빙하여 임용하는 초빙교원과 석좌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빙교원”이라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이 아닌 내.외국인으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 및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 중 초빙교수, 특임교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1.1.1.)(2016.02.01.)(2019.8.21.)
2. “석좌교수”라 함은 연구·교육·산학협력·국제교류 등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2. 16.)

**제3조 (자격)** 본 규정에서의 교원은 대학교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이나 특수분야의 전문가 또는 교육·연구 및 관련 산업체의 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임무)** ①본 규정에서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본 대학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
2.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학생의 취업지도와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4. 본 대학의 학사행정 지원 등

②초빙교원은 주당 3일 내지 4일간에 걸쳐 9시간 이하의 강의나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개정2002.3.1.)(개정2007.3.1.)(2019.8.21.)

③ 석좌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①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2012.9.1.)

②초빙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할 수도 있다.

③석좌교수는 처(원)장 또는 학장 등 교무위원의 추천에 의한다.(개정2015.2.16.)

④임용시에는 교원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원의 계약임용 기간)** ①교원의 계약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2009.3.1.)

②교원의 총 계약 임용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업적평가가 우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개정2012.1.1.)

③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④초빙교원의 계약기간은 만 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 만료일로 함), 석좌교수의 계약기간은 만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

여 본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20.09.01.)

**제7조 (임용계약서)**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1. 교원의 신상명세
2. 근무대학 및 직급, 연봉 등
3. 계약임용 기간
4. 계약임용 기간 중의 신분 및 임무
5. 계약임용 기간 만료 후의 퇴직
6. 관할 법원

**제8조 (직급부여)** ①본 규정에서의 교원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초빙교수 또는 석좌교수로 통칭한다.

**제9조 (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보수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본 규정에서의 교원에게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업적평가)** 초빙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면직)** 본 규정에서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3. 제10조의 업적평가 결과가 불량하였을 때
4. 매학기 강의 평가 결과가 4.0미만인 경우
5. 기타 활용부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적용)** 본 규정에서의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본 대학 관계 규정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